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박성중  
전화 033-371-4316 / 팩스 033-371-4615

## 보 도 자 료

2024. 7. 17.(수)

### 제 목

## 2004년 영월에서 발생한 장기미제 살인사건 수사결과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(지청장 김현우)은 2004. 8. 9. 발생한 「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」의 피고인 A○○(남, 59세, 당시 나이 39세)을 오늘(7. 17.)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였음
- 이 사건은 수사 초기에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용의선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장기 미제로 남겨졌으나, 이후 경찰 재수사 및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었음
-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① 범행현장에서 채취된 족적 관련 추가 감정, 혈흔 및 DNA 분석, 휴대전화 디지털증거와 통신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과학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② 족적의 동일성 관련 논문 검토, 동종 살인사건 판결문 분석 등 철저한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, ③ 목격자들을 재조사하여 진술증거를 확보하였음
  - 이를 통해 이 사건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여성이 피해자와 사귀게 되자,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며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던 계획범죄로 확인됨
- 검찰은 피고인에게 ‘범죄에 상응하는 중형’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‘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은 반드시 처벌받는다’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도록 엄정 대응할 것임
- 한편, 피해자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개시했으며, 앞으로 피해자 유족의 재판 절차 참여와 양형진술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임

## 1 피고인 및 피해자

### 1 피고인

- A○○(남, 59세, 범행 당시 39세, ○○시 소재 연구원 근무)

### 2 피해자

- B○○(남, 당시 40세, ○○영농조합 간사)

## 2 공소사실 요지

- '04. 8. 9. 15:30~15:45경 강원 영월군 소재 피해자 근무지인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(몽키스패너 추정)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때리고, 불상의 예기로 목 12회, 복부 2회 찔러 피해자가 두부손상 및 경부, 복부 자창으로 사망케 하여 살해 **【살인】**

\*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(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)에 의해 공소시효 적용 배제

## 3 수사 경과

- '04. 8.~'05. 2. 영월경찰서는 A○○의 알리바이 주장\*에 따라 용의선상에서 제외, 이후 증거부족으로 수사중단
  - \* A○○은 사건발생일인 '04. 8. 9. 영월군 소재 △△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면서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 제출
- '14. 3.~ 강원도경 장기미제수사팀에서 본건 재수사 착수
- '20. 11. 24. 강원도경에서 검찰로 불구속 송치
- '20. 11.~'24. 6. 검찰 보완수사
- '24. 6. 28. A○○ 구속
- '24. 7. 17. A○○ 구속 기소

[검찰 주요 보완수사 사항]

• 물적조사 (과학수사)

- AOO 사무실, 차량 등 압수수색, AOO DNA 채취 및 AOO 샌들의 혈흔 및 DNA 재감정, 범행현장의 족흔과 AOO 샌들 족흔 재감정 등
- 관련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압수, AOO이 제출한 △△계곡 사진 감정 등

• 인적조사

- AOO 피의자신문(총 6회) 외 범행현장을 비롯해 피고인이 머물렀다는 계곡에서 각각 피고인을 목격한 참고인 등 조사

• 법리검토

- 족적 등 현장증거가 발견된 동종 살인사건에 대한 판례 등 분석
- 족적의 동일성 수준에 대한 확률적 비교 관련 논문 검토

4

수사 결과

① 범행 시각 피고인의 범행 현장 존부

- 피고인은 사건 당시 영월군 소재 △△계곡에서 가족 등과 물놀이를 하고 있었으며,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
- 그러나,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\*에 대한 감정 결과를 비롯한 통신내역,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, 피고인이 범행일시경 계곡을 나와 범행 현장에 있었음이 명백히 확인됨

\* 국과수 감정 결과 피고인 샌들의 족적과 범행현장의 족적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

- 피고인은 2004. 8. 9. 영월군 소재 △△계곡에서 가족 등과 물놀이를 하던 중 술을 사 오겠다면서 자연스럽게 위 계곡을 나온 뒤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해 30여 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다시 계곡으로 복귀한 것임

② 범행 동기 및 경위

- 피고인은 수사 초기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였으나, 피고인 및 관련자에 대한 보강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, 피고인의 이메일 및 외장하드디스크 압수수색 결과, 통신내역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범행 동기를 규명함

- 피고인은 2003. 12월경부터 영월에 거주하던 C○○(여)과 교제 중이었으나, C○○이 2004. 6월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되면서 피고인에게 “피해자를 좋아한다”라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함

※ 피고인은 과거에 교제한 여성들의 신분증 촬영 사진 등을 몰래 보관해 두거나, 위 C○○이 그 남편과 대화하는 것을 녹음해 두는 등 교제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해 강한 집착 성향을 보임

- 피고인은 범행 3일 전 새벽 피고인의 집에서 차량으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범행 장소 소재지인 영월을 다녀간 후 피해자가 재직 중인 영농조합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, 영월에 있는 △△계곡에 온 것을 기회삼아 피해자를 살해한 것임

### 3 공범 유무

- 범행 당일 위 △△계곡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C○○과 D○○(여, 피고인의 사촌동생)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였으나,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확인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함

※ 오늘(7. 17.) C○○과 D○○ 각각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처분

## 5 피해자 지원

-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개시하였음

※ 피고인 구속 이후 피해자 유족 심리치료 진행 중

- 또한, 피해자 유족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특별결의 및 법무부 ‘스마일 공익신탁’ 제도를 통해 위로금 등을 지원할 예정임

\* ‘스마일공익신탁’은 2016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을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국민 기부로 재원을 마련 중인 신탁으로,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

## 6

### 향후 계획

-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
- 또한, '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'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도록 엄정 대응함과 아울러 피해자 유족의 재판 절차 참여와 양형진술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임 ☒